

옥 회 천 하 천 기 본 계 획 수 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2013. 04.



군 산 시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옥회천 하천기본계획
- 위치 : 전북 군산시 수송동 24-3번지선(경포천 분기점) ~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364-5번지선(미제천 합류점)
- 연장 : 6.30km
-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2(제2호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계획시행자 : 군 산 시
- 승인기관 : 전 라 북 도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2.1 개발계획의 대상지역

가. 대상지역 및 선정사유

- 계획하천의 대상지역은 전북 군산시 수송동 24-3번지선(경포천 분기점) ~ 전북 군산시 회현면 월연리 364-5번지선(미제천 합류점)으로 선정함.
- 계획하천에 대한 효율적 관리·이용·보전·개발 및 치수경제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당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종합개발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나. 개발대상지역경계 설정

- 하천의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시설제방현황 등을 고려하여 현 하천과 하천연안을 대상지역경계로 설정함.

2.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가. 개요 및 설정방법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상지역의 설정은 계획의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고,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항목별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으며, 주요항목의 설정도는 <그림 2.2-1>과 같음.

(1) 사업의 특성

- 계획은 계획하천에 대한 효율적 관리·이용·보전·개발 및 치수경제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일관성 있게 조사, 분석하여 당해 하천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수자원 종합개발지침으로 활용코자 함.
- 기본계획에 따른 하천의 제방 및 하폭의 변화, 수리시설의 변화 등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함.

(2) 환경적 특성

- 하천의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른 SS농도의 국부적인 증가로 계획 하천수질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공사시 소음진동 및 대기질에 영향이 예상되는 주변 정온시설이 분포하는 지역을 설정함.
- 또한, 운영시 계획하천 유역내 수질오염물질 발생원의 분포지역을 검토대상지역으로 설정함.

나. 대상지역 설정

구 분		현황조사범위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시간적범위	공간적 범위
대기 환경 분야	기 상	- 군산기상대 (2003~2012년)	-	-
	대 기 질	- 계획하천 경계 0.3km 이내 - 측정지점 : 1개소	- 공사시	- 계획하천 및 주변 영향 이 예상되는 정온시설
수 환경 분야	수 질	- 군산시 - 계획하천 및 하류수용하천 - 측정지점 : 하천수 3개소(3회 조사), 저질 3개소	- 공사시	- 계획하천 및 하류 수용 하천
	수리수문	- 군산시 - 계획하천 및 하류수용하천	- 공사시 - 운영시	- 계획하천 및 하류 수용 하천
토지 환경 분야	토지이용	- 군산시 및 계획하천	- 운영시	- 계획하천
	지형·지질	- 군산시 및 계획하천	- 공사시	- 지형변화가 예상되는 계획하천
자연 생태 환경 분야	동·식물상	- 계획하천 및 인근 0.5km	- 공사시 - 운영시	- 계획하천 및 주변인접영 향권
	자연환경 자산	- 계획하천 및 인근지역	- 공사시 - 운영시	- 계획하천 및 인근지역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 군산시 및 계획하천	- 공사시	- 계획하천
	소음·진동	- 계획하천 경계 0.3km이내 - 측정지점 : 1개소	- 공사시	- 계획하천 주변 정온시설 (주거지역, 축사 등)
	위락·경관	- 군산시 계획하천 및 인근지역 - 주요 조망점	- 운영시	- 계획하천 및 주변지역



<그림 2.2 - 1> 평가대상지역 설정도

2.3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가. 환경영향요소 추출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단계로 계획하천의 사업계획을 토대로 공사시 및 운영시 자연환경의 자연·생태환경의 보전, 생활환경의 쾌적성 및 사회 경제환경의 편익성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표 2.3-1>과 같이 사업특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추출함.
- 환경영향요소는 당해 사업의 특성과 대상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현장조사와 함께 환경현황을 파악한 다음, 사업대상 지역뿐만 아니라 인접 영향권을 포함하여 장·단기적인 환경요소 중 중요한 요소를 추출하였음.

<표 2.3 - 1> 환경영향요소 추출

구 분	환경영향요인	환경영향요소
공사시	제방 정비	▫ 하천지형변화, 토지 및 시설물 점유, 토사의 유출
	하천시설물 설치	▫ 낙차공, 교량 등 시설물 설치
	장비 및 인부의 투입	▫ 건설장비 투입, 오수발생, 폐기물발생
운영시	제방 및 호안존재	▫ 하폭의 변화, 수리수문의 변화
	수질오염 저감방안 수립	▫ 수질오염 저감

나. 검토항목 선정

- 계획시행에 따른 검토가 필요한 항목 설정은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 2010.12, 환경부』에 제시된 검토항목에 제시된 주요 평가항목과 상기에서 추출된 환경영향요소를 비교·검토하여 설정하였으며, <표 2.3 - 2>에 나타냄.

<표 2.3 - 2> 검토항목 및 주요검토항목 선정

○ 총 검토항목(20)		▫ 대기환경분야 : 기상, 대기질, 악취 ▫ 수환경분야 : 수질(지표·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위락·경관,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회·경제 분야 : 인구, 주거(이주의 경우 포함), 산업
○ 금회 사업	중점검토 항목(9개)	▫ 대기환경분야 : 대기질 ▫ 수환경분야 : 수질, 수리 수문 ▫ 토지환경분야 : 토지이용, 지형·지질 ▫ 자연생태환경분야 :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생활환경분야 : 친환경적자원순환, 소음·진동
	일반검토 항목(2개)	▫ 대기환경분야 : 기상 ▫ 생활환경분야 : 위락 경관
	제외검토 항목(9개)	▫ 대기환경분야 : 악취 ▫ 수환경분야 : 해양환경 ▫ 토지환경분야 : 토양 ▫ 생활환경분야 :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 사회·경제 분야 : 인구, 주거, 산업

<표 2.3 - 3> 중점검토항목의 선정사유 및 검토사항

중점평가항목		선 정 사 유	평 가 사 항
대기 환경	대 기 질	공사시 토공작업, 장비가동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 계획하천 주변 대기질현황 파악 - 공사시 모델링을 이용한 대기질 영향예측 - 저감방안 수립
수 환경	수 질	- 공사시 강우로 인한 토사유출 - 공사시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발생	- 토사유출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투입인력에 의한 오수발생량 예측
	수리 수문	하천의 수문분석 및 유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치수계획 및 하천환경정비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 하천의 수문분석 및 유역특성 파악 - 적정 치수계획수립
토지 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변화	토지이용계획 및 변화
	지형 지질	토목공정에 따른 토량이동, 지형변화 발생	토공계획 분석하여 지형변화, 사면안정 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자연 생태 환경	동 식물상	사업시행에 따른 녹지자연도, 동 식물상의 서식지 및 종분포 상황 변화	- 계획하천 동 식물상의 현황파악 - 공사시 동 식물상의 변화 예측 및 보전대책수립
	자연 환경 자산	계획하천 주변자연환경자산에 영향	- 주변 자연환경자산현황 파악 -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연순환	공사시 건설폐기물, 폐유 및 생활 폐기물, 분뇨발생	공사시 폐기물 발생량 예측 및 처리대책수립
	소음 진동	공사시 건설장비 운영에 따른 소음 진동 발생	공사시 소음영향 예측 및 이에 따른 대책 제시

<표 2.3 - 4> 일반검토항목과 제외항목의 선정사유 및 검토사항

평가항목			선 정 사 유	평 가 사 항
일반 현황 조사 항목	대기 환경	기 상	▣ 기초자료로 활용	▣ 군산기상대의 최근 10년간 기상자료 조사(2003~2012년)
	생활 환경	위락 경관	▣ 경관현황 및 사업시행에 따른 경관의 변화	▣ 계획하천 주변 경관자원 분포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 ▣ 주요 조망점에서 계획하천의 경관변화 여부 파악
제외 항목	대기 환경	악 취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수 환경	해양환경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토지 환경	토 양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생활 환경	인 구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주 거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산 업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위 생 공중보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전과장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일조장해	▣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 없음.	-

2.4 대안

가. 대안의 종류

- 대안의 종류는 『환경부고시 제2009-173호』(2009.08.24, 환경부)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별표 2】에 의거하여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시기·순서”등의 측면에서 선정할 수 있음.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대안의 종류 중 계획의 건전성 및 적정성을 평가하는 “계획비교”측면에서 대안 설정·검토를 실시함.

<표 2.4 -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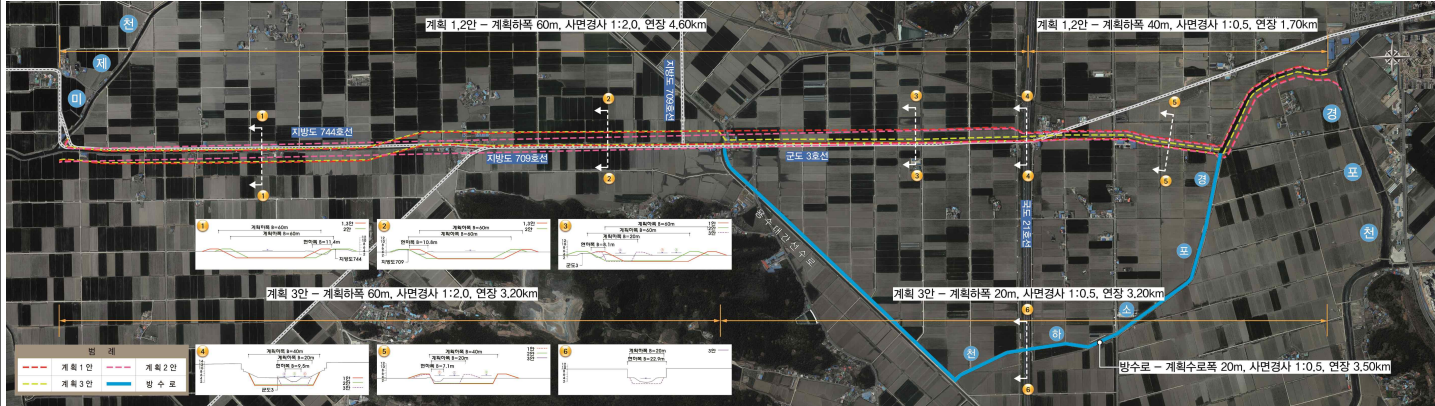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여부
계획비교	○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선정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선정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입지	○ 개발 대상 입지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대상지역 또는 그 경계의 일부를 조정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자료)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 - 173호)

나. 대안 설정분야

- 계획은 홍수피해에 대비하며, 수자원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no action)와 계획을 수립하였을 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비교 검토하는 경우를 대안으로 선정함.

<표 2.4 - 2> 대안의 비교 및 선정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개요	- 기점수위 : 미제천(No.22)의 홍수위 적용(기수립 반영) - 계획하상고 : 시점-경포천 분기점 현하상고 EL.0.58m 종점-미제천(No.22) 계획하상고 EL.0.04m			행정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No Action)
	- 지방도, 군도 준치 21번국도 지점에서 계획하폭 및 계획하상경사 변경	- 지방도, 군도를 제방겸용도로로 활용 21번 국도지점에서 계획하폭 변경	- 대간선수로 상류로는 하천 분기 (20m+20m) - 옥산천(소)을 활용한 수로분기 설치	
평면계획	 The map displays a flood control plan for a river section. It includes several cross-sections (1-5) showing the planned bed and water levels. Key features include: - Plan view showing the river channel, existing and proposed levees, and various structures like bridges and culverts. - Section 1: Planning 1st plan - Planning bed 60m, side slope 1:2.0, length 4.60km. - Section 2: Planning 1st plan - Planning bed 40m, side slope 1:0.5, length 1.70km. - Section 3: Planning 3rd plan - Planning bed 60m, side slope 1:2.0, length 3.20km. - Section 4: Planning 3rd plan - Planning bed 20m, side slope 1:0.5, length 3.20km. - Section 5: Planning 3rd plan - Planning bed 20m, side slope 1:0.5, length 3.50km.			

<표 2.4 - 2> 대안의 비교 및 선정

구 분	제1안	제2안	제3안	제4안
종단계획				
장·단점	- 하도사행으로 주거지 및 창고 보상 최소화 - 지방도 및 군도 존치	- 하도선형 개선으로 연장 최소화 - 주거지 및 창고보상 약 90여동 - 지방도 및 군도 개보수 필요	- 방수로 설치로 상류구간 홍수량 저감 - 소하천 계획변경 필요 - 지방하천 변경고시 필요 - 용지보상면적 증가 - 계획교량 개소수 증가	- 하천계획의 수립이 없어 환경적으로 현재상태 유지 - 홍수피해에 대한 위험이 내재 - 계획의 미수립으로 안정적인 하천치수 및 수자원관리가 어려움.
사업비	86,000백만원	87,000백만원	95,000백만원	-
채택안	◎			

3.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결과

가. 협의회 구성

- (1) 주 관 : 군 산 시
- (2) 협의회심의 일자 : 2013.3.19 부터
- (3) 심의방법 : 서면심의

나. 협의회 심의의견

<표 3 - 1> 군산시청 재난관리과장 이강현

구분	의 건	비 고
대안설정 관련	○ “대안 1” 적정	
중점검토 항목관련	중점검토 9개 항목, 일반검토 2개 항목 ○ 설정 적정하나, 과업 수행시 세밀히 조사 ○ 조사후 대응방안 계획수립하여 환경보전 최적방안 도출	
기타	○ 자연중심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대안” 제시	

<표 3 - 2> 군산시청 환경위생과장 박병래

구분	의 건	비 고
대안설정 관련	○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와 홍수 피해에 대한 방지계획 수립으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한 대안 1안의 선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중점검토 항목관련	○ 중점 검토 9개 항목 및 일반 검토 2개 항목 설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 평가서 초안의 공고, 공람 및 설명회 개최시 적극 홍보 요청	
기타	○ 하천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여 홍수 피해를 유발하는 보, 낙차동 등은 최소한으로 설치하는 방안 검토 ○ 계획 수립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반영이 어려운 경우 충분히 이해시켜 민원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함.	

<표 3 - 3>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이철수

구분	의견	비고
총괄 의견	○ 동 사업은 옥회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입지의 타당성과 계획의 적정성 등을 중점 검토하여 토지이용계획 수립, 대안마련 등 환경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대안설정 관련	○ 토지이용 구상안 - 하천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친수시설 및 수리시설은 지양하여야 하며, 동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대안은 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 전략과 방법, 위치와 시기,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설정 가능한 대안을 No Action을 포함하여 3개 이상 설정하여야 함. - 설정된 대안별로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비교검토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	
중점검토 항목 설정	○ 평가항목 - 평가항목(총 21개) 중 중점 평가항목 9개(당초 9개), 일반 평가항목 3개(당초 2개), 제외항목 8개(당초 9개) * 경관(일반→중점), 자연환경자산(중점→일반), 토양(제외→일반) ○ 평가범위 - 수질, 저질 항목은 조사지점 확대(경포천 합류지점 추가), 나머지 항목은 원안 동의(계획서 28p) ○ 평가방법 - 선정된 대안별로 세부항목[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09-173호, '09.8.24)]에 따라 환경영향을 비교·평가 하되, 다음의 항목에 대해 중점 검토하여 영향을 예측·분석하여 제시하여야 함 ○ 지형·지질(수리·수문 포함) - 하천 내 설치된 구조물(보, 낙차공, 제수문, 교량 등)의 현황 및 정비계획을 명확히 제시하고 사업시행시 친환경 공법적용 - 사업시행시 하상정비, 축제 및 호안공사로 인한 지형변화 예측 및 지형 변화가 최소화 되도록 계획 수립 ● 대규모 하폭 확대(최대 약 60m)에 따른 지형훼손 저감방안 중점 강구 ○ 동·식물상 - 하천 정비시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제시 ● 하천변 식생, 서식지 조성 및 보전방안 등 수생태계 복원방안 수립 - 유로변경구간 등 전구간에 대하여 하천 상·하류간 생태적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표 3 - 3>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평가과 이철수 (계 속)

구분	의견	비고
중점검토 항목 설정	○ 수질 - 새만금개발계획, 수질오염총량계획 등 관련계획과 동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수질,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대책을 발굴하여 동 기본계획에 포함 - 사업지구 전반에서 하도굴착이 계획되어 있는 바, 사업시행시 새만금 유입지점인 만경강하구에 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을 중점 강구 - 운영시 도로, 농지에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저감방안(인공습지, 천변 저류지 조성 등)을 강구 ○ 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경관 영향(주요조망점의 사업 전?후 비교) 및 저감 방안 제시 ● 교량, 호안 등 계획시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 강구 제시 ※ 자연환경보전법 제28조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여부 검토	
주민등에 대한 의견수렴	○ 주민 등의 의견수렴에 대하여 개정('12.7.22. 개정·시행)된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절차 등에 따라 적의 실시	
기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동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개 ※ 환경영향평가법('12.7.22. 개정·시행) 제53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 등 작성시 동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작성 대행	

<표 3 - 4>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조용현

구분	의 건	비 고
대안설정 관련	○ 의견없음.	
중점검토 항목관련	○ 의견없음.	
기타	○ 생활환경의 환경질 측정항목 및 조사시기에서 수질 항목에 W-1 지점의 지하수 수질검사 추가 요함. ○ 또한, 저질 분석 항목에 있어서 수질조사지점의 저질 분석을 수질과 함께 3회 측정 요함. ○ 소음·진동 항목의 조사 횟수를 민가에 접하므로 2회 측정 요함.	

<표 3 - 5> 군산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김형주

구분	의 건	비 고
대안설정 관련	○ 행정계획을 변경하는 제1안은 21번국도 지점에서 계획하폭 및 계획하상경사 변경이 적절함	
중점검토 항목관련	○ 주요평가항목에서 추출된 중점검토항목 9개는 적절함	
기타	○ 하폭확장에 따른 토지보상과 민원등이 예상되는 경우 당북리(칠다리) 대간선 수로도 고려할 수 있도록 향후 검토가능 함	

<표 3 - 6> 원광대학교 환경조경학과 교수 김상옥

구분	의 건	비고
대안설정 관련	○ 별도 의견 없음.	
중점검토 항목관련	○ 별도의견 없음 단, 금성리 임야지역의 경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상 1등급 지역이므로 심도 있는 자연생태환경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기타	○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참고요망	

<표 3 - 7> (재)군산환경사랑 이사 나용식

구분	의 건	비고
대안설정 관련	○ 침수(홍수)피해 방지 대안 1안이 적정 - 현지여건을 고려한 하천계획	
중점검토 항목관련	○ 중점검토 9개 항목 및 일반검토 2개 항목 설정에 대한 의견 없으나 세밀한 생태환경조사 필요함.	
기타	○ 하천설계시 친환경 설계로 주변마을과 동식물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설계수립 및 시공 요함 ○ 공사시에도 소음, 진동, 비산먼지에 대책 수립 할 것 ○ 새만금 수질오염 저감 방안 수립	

<표 3 - 8> (재)군산환경사랑 이사 박주향

구분	의 건	비고
대안설정 관련	○ 환경영향평가 대안선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중점검토 항목관련	○ 검토항목은 적정하며, 각 항목별 평가사항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의 정온시설을 충분히 감안하여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기타	○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천을 인위적인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는 친수 하천으로 관리해야 함. ○ 협의위원들의 현장 방문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3 - 9> (사)하천사랑운동 정책위원 이종천

구분	의 건	비고
대안설정 관련	○ 종합의견 - 자연생태환경, 주민생활환경 측면에서는 새로운 수변공간이 조성되므로 긍정적이나 관련계획(만경강 종합계획, 경포천 정비기본계획과의 연계)의 연계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함. * 1안 설정에 동의하나 1) 경포천 정비기본계획에서 본계획은 방수로 개념으로 분리점에 배구관문설치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음으로 보완 검토가 필요 2) 만경강 정비기본계획에서 새만금 방조제로 인한 홍수위상승으로 탑천의 제방고를增高시킨 사례는 오히려 경포천 유역(시내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	
중점검토 항목관련	○ 나.항의 계획의 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에서 1) 환경계획의 건전성 항목 중(63쪽)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이 고려되었는가? 예시 주변 개발 여건 및 생태환경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검토보완 요구 : 본 하천은 현재의 농수로를 확장 굴착하여 지방하천으로 병결하는 하천으로 금강하류와 만경강(새만금)의 자연생태가 교류되는 매우 의미 있는 하천이 되는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평소 유수량에 대한 검토와 최소한 습지역할을 할 수 있는 대간선수로의 유입수 관리대책이 요구됨. ○ 다. 계획의 일관성 1) 수직적 일관성(64쪽) * 상하위 행정계획간 일관성 있게 계획되었는가? - 경포천 정비계획 인계 문제 1) 배수감문 문제 2) 하폭조정 문제에 대한 검토가 요구됨.	
기타	○ 물고기 이동에 장애를 주는 시설물과 제방 설치를 최소화 했으면 함. ○ 새만금으로 오염물이 유입되지 않았으면 함. ○ 물고기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울목 같은 곳을 설치했으면 함. ○ 옥잠화 등 수질 오염물질을 제거해주는 식물을 심었으면 함 ○ 토목공사시 굴차 처리과정의 주변오염, 차량소음, 굴착토 처리장 확보 등 관심이 요구됨.	